

19. 위탁업무수행 일지(종결)

연도	방문일자	업무수행자		업무수행 내 용	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	사업주 조치내용			사업주 확인
		자격	성명			개 선	진 행	미개선	
2022	2022-01-18	간호사	구현경	보건교육자료 제공 및 지도	① 노로바이러스 ② VDT중독증 예방 ③ 슬기로운일터생활 스트레칭 ④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(경기3 년1회) ⑤ 한파 영향예보 산업분야 종 보 포스터(고용노동부) ⑥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고용노동부 미세먼지로 인한건 강장해 예방 가이드 자료 배포 함 (2022.01.11.) - 2022년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계획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공함-		○		
				2022년 보건관리 연간계획 수립	① 작업환경측정 : 상 : 4월 (주기 : 년/1회) ② 밀폐공간프로그램 :물탱크 해당 - 밀폐공간프로그램 작성하여 실시 바람 산업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 장 제618조~제625조 참조 [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관한규 칙별표18] ③ 위험성 평가(1년/1회) : 2022년 하반기 실시 예정 ④ 근골격계질환조사 : 2021년 실시→ 2024년 대상 ⑤ 일반/ 특수건강검진 : 2021 년 8월 → 계획 2022년 8월 (주 기 : 12개월) - 근로자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(채용 시 교육)을 진행하시고 배치할 공정에 유해인자를 확 인하여 배치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, 별표 23을 참고하여 유해인자, 주기, 근로 자 누락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. (ex 소음(배치전(공정 배치 하 기전)→배치후(12개월이내)→주 기24개월이내)) - 특수건강검진 (분류) D1, 소 음 90dB 초과시 작업환경측정+ 특수건강검진 2/1 주기로 단속 함을 안내드립니다.		○		

연도	방문일자	업무수행자		업무수행 내 용	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	사업주 조치내용			사업주 확인
		자격	성명			개 선	진 행	미개선	
				2022년 보건관리 연간계획 수립	⑥ 직무스트레스 실시: 2021년 실시 노심혈관질환평가: 2021년 실시 -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근로 자에 대하여 1년/1회 실시 바랍 니다. [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관한규 칙 제 66조 참조] ⑦ 기업건강증진지수: 2022년 12월 안내 예정 ⑧ 건강증진 사후관리: 의사 일정 (2022년 4월, 10월 예정) ⑨ 안전보건관리책임자: 오광 복부장 (2020.10.13) 직무교육 이수 - 2022년 직무교육 대상일을 안내드립니다. ⑩ 관리감독자: 2022년 하반기 실시 예정		○		
				2022년 보건관리 연간계획 수립	⑪ 안전보건교육 (비사무직 3개 월/6시간, 사무직 3개월/3시간 실시) - 월 단위로 실시 확인 경기: 사무직(매월1시간.매분기 3시간) / 비사무직(매월2시간, 매분기6시간) · 채용: 1회/입사시 (8시간) · 복합: 유해부서배치전(1회) 16시간 / 작업내용변경시(1회/ 변경발생시 2시간) · 서류보존: 3년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 표4, 별표5 참조하여 근로자 누 락 없이 교육 실시 바람 · 정기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가동이며 교육일에 휴가,연차, 개인사정으로 인한 미참석시 합 석 대상에게 별도의 교육을 진 행하여 근로자 누락 없이 교육 을 실시하여 서류 보존 바람 니다. ⑫ 안전보건관리규정 (해당사항 없음) 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(50인 이상시 해당)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/4분기 안전으로 작업환경측정 계획 및 건강검진기관, 시기 심의·의결 바랍니다. - 안전보건협의체 (협력사 있 는 상태임) ⑭ 보호구 지급: (방진마스크, 안전화, 귀마개, 안전모, 보안 경) -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 한 보호구 사용,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지도함 ⑮ 구급함점검: 상반기 4월, 하반기 10월 예정		○		

연도	방문일자	업무수행자		업무수행 내 용	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	사업주 조치내용			사업주 확인
		자격	성명			개 선	진 행	미개선	
				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	근로자 상담시 적극적 지도, 협조 바랄. 유소견자 중증도 순으로 실시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.(의사 or 간호사)		○		
				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	[산업안전보건법 63조 참조]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.		○		
				도급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조치	[산업안전보건법 64조 참조]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5. 18.> 1.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. 작업장 순회점검 3.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.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.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. 작업 장소에서 화재·폭발, 토사·구덩이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.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.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.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화재·폭발 등 대량행위로 경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작업장 순회점검, 안전보건교육 지원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		○		

연도	방문일자	업무수행자		업무수행 내 용	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	사업주 조치내용			사업주 확인
		자격	성명			개 선	진 행	미개선	
				근로자 건강진단 확인 및 지도	근로자 건강진단 상임 : D2 3 명, C2 2명 기타 1명(총 6명) 식이관리지도 규칙적 운동지도(등산) 주거환경개선지도 생활습관개선지도 규칙적 약 복용지도 금연금주지도 스트레칭 지도		○		
				간이검사 실시	음압검사 방압검사		○		